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67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10. 2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2008년 8월 7일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맞도록 “간사” 명칭을 “부위원장”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중 제48조의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8조 【의사일정과 개최일시】 위원회의 의 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<u>간사와</u> 협의 하여 정한다.</p>	<p>제40조 【의사일정과 개최일시】 ----- ----- <u>부위원장과</u> ---- -----.</p>